

CSR보고서 검증의 결정요인과 지배구조의 역할*

육근호(주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yook@bufs.ac.kr)

본 연구에서는 CSR(사회적 책임) 보고서 내용에 대한 독립된 제3자 검증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가 이런 관계에서 어떤 역할(조절기능)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산업특성(규제산업과 환경친해산업에 속하는 기업)에 따라 CSR검증의 수요가 달라지지는 않았으며, CSR 검증업무의 종류(Type1, Type2)와도 관련이 없었다. 다만 규제산업의 기업에서는 회계법인 대신 전문기관의 검증을 선호하는 증거가 나타났다. 둘째, CSR활동(환경효율, 환경투자, 사회공헌비용)의 수준과 CSR검증과의 관계를 보면, 환경효율과 환경투자 수준이 낮을수록 CSR검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결과가 관찰되었으며 이것은 사회정치적 정당성 이론(legitimacy theory)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CSR활동 수준이 검증 제공자의 선택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투자자와 사회공헌지출의 비율이 높고 기업규모가 큰 기업은 Type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제변수(규모, 수익성, 부채비율)가 CSR검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작을수록 CSR검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변수가 CSR 검증업무의 종류(Type1, Type2)에는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끝으로 외국인지분율과 CSR활동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외부검증의 채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환경투자자와의 상호작용은 회계법인을 선호하고, Type2의 광범위한 원칙 적용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CSR검증수요의 결정요인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CSR검증의 수준과 검증업무의 종류까지 연구대상을 확대한 것이 연구의 공헌점이다.

주제어: CSR검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기업지배구조, 검증 제공자, 사회공헌지출

1. 서론

최근의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비재무정보 중심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영보고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보고의 의무화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KPMG, GRI, 공동조사 2013). 그런데 CSR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포함) 내용은 이해관계자가 검증하기 어려운 잠재적 미래 지속가능성에 관한 경영자의 사적 정보를 연차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 비해 많

이 담고 있다(Datt, Donleavy, and Tang, 2015). 기본적으로 CSR보고서에서는 환경(온실가스 등)정보와 사회적 측면(인권 등)의 정보에 대한 계량화는 내재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하며,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CSR보고서가 공시하는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CSR정보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외부검증(제3자 검증)이 필수적이다.¹⁾ 이러한 CSR검증은 조직이 나아가는 주요 지

최초투고일: 2016. 8. 10 수정일: (1차: 2016. 9. 24, 2차: 2016. 10. 18) 게재확정일: 2016. 11. 7

* 본 연구는 2016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내지원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1) CSR보고서의 감사에 대해서는 검증(assurance)이라는 용어 이외에 외부검증, 감사(auditing), 인증(validation), 심사(verification)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GRI 2013; Owen, 2007).

속가능성 측면의 정확한 방향을 제공하고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을 이해관계자에게 보증해 준다.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대표적인 글로벌 CSR 보고서의 표준)에서도 제3자에 의한 외부감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CSR 또는 환경회계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와 병행하여 외부검증을 수감하고 있으며(Darnall, Seol, and Sarkis, 2009), 그에 따른 제3자 검증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증가하고 있다(Simnett, Vanstraelen, and Chua, 2009; Cohen and Simnett 2015). KPMG 서베이(2013)에서도 제3자의 감사(검증)를 받는 기업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2:29%, 2008:40%, 2013:59%).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또는 CSR정보에 대한 외부감사(제3자 검증)가 규제당국, 환경관리자, 기타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 채택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을 포함한 CSR과 지속가능성 분야는 물론 회계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의 제약과 제한된 연구접근 방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Darnall et al. 2009; Cohen and Simnett 2015).

지속가능성 또는 CSR정보에 대한 내부감사와 외부검증(제3자 검증)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것은 첫째, 실무에서 CSR검증의 채택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CSR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reporting)에 대한 동인이나 효과에 대한 것이며, CSR검증을 결정지우는 다양한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CSR검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CSR검증 제공자, 검증의 수준, 검증의 유형 등 검증의 방법과 범위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거나 이를 위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Zhou, Simnett,

and Green, 2016). 셋째, 재무제표 감사와 비교해서 강제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이 없고, 회계감사 법인에만 독점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양한 검증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수행되는 경쟁시장이라는 점 등 여러 특별한 성격을 지니므로 연구의 가치가 높은 미래 연구과제의 보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CSR검증에 대한 수요를 결정지우는 주요요인(동인)을 CSR검증 여부의 선택, 검증서비스 제공자의 선택에 관련된 의사결정 등의 문제(Zhou et al., 2016), 국가-수준과 기업-수준의 결정요인의 차이 등(Simnett et al., 2009a; Casey and Grenier, 2015)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CSR보고서의 제3자 검증과 법적 책임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김성우, 2015; 전영승, 2012). 반면에 외부검증이 지향하는 것은 높은 품질의 CSR정보에 대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인데, 높은 품질의 외부검증이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성공요인(선행요인)인 검증의 수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또한 검증기준 및 검증 유형의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Cohen and Simnett, 2015). 기업이 CSR정보에 대해 검증하는 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이런 결정에 공헌하는 조직의 지배구조 특성 등에 관한 연구도 태부족하다(O'Dwyer,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추가 확장하여 지속가능경영 또는 CSR경영에 있어서 CSR검증이 다양한 관련 변수들과 갖는 구조적 관계를 정치하게 파악할 수 있는, CSR검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가 이런 관계에서 어떤 역할(조절기능)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이 접근방식은 우리가 검토한 이 분

야의 범위 내에서는 최초의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이가 있으며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CSR검증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경영상의 인센티브를 기초로 하는 대리변수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선행연구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본고에서는 일반적 환경 이슈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나 온실가스배출량과는 다른 지속가능성 변수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CSR이나 지속가능성 개념은 단일 영역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현상을 소위 3가지 기본축이라는 경제, 환경, 사회를 각각 대리하는 변수를 선택하여 조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임은 물론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기업문화나 국가 고유의 특성 등을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넷째 선행연구에서 주로 취급한 외부검증의 채택 여부, 검증제공자의 선택 이외에 외부검증의 수준(Level of assurance)과 검증 업무의 종류(Types)를 새로 포함시켜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다섯째, 기업 지배구조의 수준에 따라 CSR활동의 투입요소(CSR활동정보의 불균형과 기업특성)가 CSR검증의 품질과 수준(내용), 유형(범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즉 지배구조의 조절기능을 함께 분석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지금까지 지속가능이나 CSR 경영의 인식과 실행, 그리고 기업의 환경성과 및 기업 성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CSR검증(외부검증)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Cohen and Simnett, 2015). 따라서 기업이 CSR활동(실행수준)에 관한 정보 불균형 수준, 지배

구조, 그리고 CSR검증의 품질·수준·유형 간의 관련성 분석은 최초 시도라는 점에서 학문적 실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II. CSR검증의 이론적 배경

2.1 외부검증(제3자 검증)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환경감사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ISO 14001 (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²⁾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자신들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ISO14001의 취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며 관련 인증을 받기 위해 환경감사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환경회계를 포함한 CSR보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작성기준이 없으므로 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SR활동에 대한 내부감사와 외부검증이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외부에서 독립된 단체나 개인이 정보 내용을 검토해 왔는데, 하나는 감사법인이나 컨설팅법인 등이 정보 정확성과 신뢰성을 심사해서 보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전문가나 지속가능성 관련 NGO 등이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제3자 의견서(Opinions)가 있다. 이 의견서는 통상 구체적인 검토 절차가 없고 제3자의 개별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논평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 본고에서는 제3자에 의한 외부검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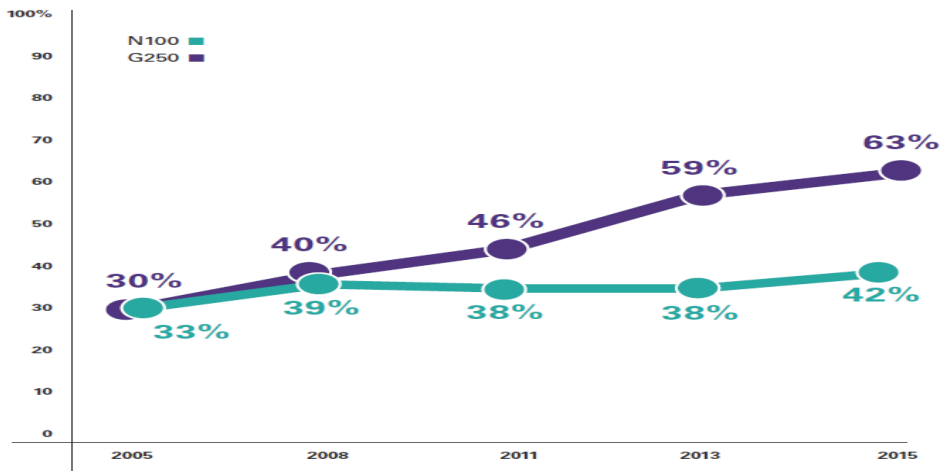
2)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체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14000 시리즈' 중 하나를 말한다. ISO 14000 시리즈에는 환경경영체제(ISO 14001), 환경감사(ISO 14010 Series), 환경라벨링(ISO 14020 Series), 환경성과평가(ISO 14030 Series), 전과정평가(ISO 14040)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다.

대상으로 삼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검증과정을 통하여 CSR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이지만 신뢰성이 낮고 기업 홍보용의 통찰이 없는 공시라는 비판을 완화하고 공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이 나아가는 지속가능성 측면의 정확한 방향을 제공하며(DQS 2016), CSR검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인지도와 신뢰성의 증대, 데이터 품질 위험의 감소와 보고서 가치의 증가, 내부 지속가능경영 개선안의 도출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행위 즉 소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GRI, 2013).

이와 같이 중요성과 효과를 인정하여 세계적으로 CSR 경영정보를 검토하는 외부검증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CSR 정보의 제3자 검증은 세계적 대기업(G250)과 각국의 상위 100

대 기업(N100) 사이에서 표준적인 실무로 자리잡고 있으며 각각 약 2/3(63%)와 42%에 해당하는 기업이 독자적으로 검증을 받고 있다.³⁾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3자 검증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대기업 중심으로 CSR 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검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CSR 보고서 발행기업의 86%가 제3자 검증을 받고 있다. 이것은 제3자 검증이 강제 의무사항인 프랑스의 96%를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검증을 받는 국가 중에서는 세계 제1위의 높은 수감 비율이다.

제3자 검증을 제공하는 조직을 보면 G250과 N100 기업을 막론하고 회계법인이 검증시장을 지배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전체의 2/3 정도), 기타 엔지니어링 또는 컨설팅 전문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정도인데⁴⁾ 이런 기타 조직에서 검증하는 비율이 최근



주) CSR보고서를 발행한 N100 기업에 속하는 3,267개 기업과 G250 기업에 속하는 230개 기업
Source: KPMG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 2015

〈그림 1〉 CSR정보에 대한 제3자 검증의 추세

- 3) 매출액 순위로 세계적 대기업(G250)과 45개 국가에서 상위 100대 기업(N100)을 대상으로 KPMG(2015)가 CSR보고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 4) GRI Sustainability Disclosure Database(2013)에서도 회계법인이 64%, 기타조직이 36%(지속가능 서비스 기업 23%, 엔지니어링 기업 13%)를 차지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The external assurance of sustainability reporting, GRI 2013).

에는 미세하나마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3자 검증의 범위를 보면 CSR정보 전체에 대한 검증이 가장 많은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다음이 특정 범위의 지수에 대한 검증이 1/3(34%), 온실가스 등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것이 5%, 나머지 11%는 특정 범위 지수와 일부 항목의 결합에 대한 검증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검증 수준(Level of assurance)인데 이것은 검증과정의 넓이와 깊이를 가리키며, 따라서 CSR보고서 사용자의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검증제공자는 통상 2가지 검증수준을 제공하는데 합리적 수준(높은 수준)과 한정된 수준(또는 중간수준)을 제공한다. 검증수준이 높을수록 특정한 검증계약을 위해 사용된 기준과 절차 즉 검증과정이 보다 엄격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검증의 책임과도 관련이 있다(The external assurance of sustainability reporting, GRI 2013). 합리적 보증은 합리적인 낮은 수준으로 보증업무 위험을 억제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적극적 형식에 따라 결론의 보고를 한다. 한정적 보증업무는 합리적 보증업무의 경우보다는 높은 수준의 보증업무 리스크를 가지며 소극적 형식에 의한 결론의 보고를 실시한다.⁵⁾

합리적 검증계약의 목적은 보고서에 의해 전해지는 높은 수준의 검증을 위해 낮은 수준의 검증을 제공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축적하는 것이다. 중간 또는 제한적 수준의 검증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계약에서, 계약의 목적은 중간수준에

대한 증명위험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증거를 축적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수준의 구분은 표현된 결론의 본질이 긍정적(합리적 수준)인지 부정적(제한된 수준)검증인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합리적 검증의 경우에도 내부통제 평가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제한적 검증의 경우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포함시켜 검증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GRI, 2013).

끝으로 검증업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AA 1000AS(2008)에서는 검증업무의 종류를 두 가지 유형(Type 1, Type 2)으로 분류하고 있다. Type 1은 검증의 기본원칙인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의 충족 정도를 검증하는 것이며 Type 2는 이 세 가지 원칙은 물론 특정한 분야(specified sections)에⁶⁾ 대한 신뢰성 원칙의 충족 정도까지 검증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2.2 CSR검증에 관련된 이론

CSR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행할 것인지, 보고서 내용을 외부에서 검증을 받을 것인지 등과 같은 CSR 의사결정을 설명하는데 몇 가지 이론적 배경이 사용되었다(Gray, Kouhy, and Lavers, 1995). CSR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당하고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윤리적 배경과, 주주의 부를 창조하기 위한 경제적 배경의 두 가지 관점이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5)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2015보고서에서는 “이 검증의견서의 검증정도는 합리적 보증수준으로 검증하였으며, 결론으로서 온실가스와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2011년 보고서)에서는 “환경 및 사회적 성과와 관련하여 수록된 정보는 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나와 있다. 드물지만 포스코(2014 보고서)의 경우에는 온실가스배출량은 합리적 확산 검증대상이지만 온실가스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제한적 검증대상이라고 하였으며, 삼성전자 2015 보고서에서는 합리적 검증을 통해서 는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중요사항을 인지 못할 수도 있으며 결론으로서 보고서의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검증의견을 제시하였다.

6) 특정한 분야는 환경, 건강, 안전에 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관점을 통합한 이론적 배경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 통합적 배경 중에서 정당성 이론(legitimacy theory) 및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과 같은 정치경제적 이론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⁷⁾ 사회 정치적 정당성 이론은 환경공시의 수준이나 범위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있어서의 공적 압력의 크기에 의존하며 따라서 환경성과 나쁜 기업은 이런 압력에 직면하여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환경 정보를 더 많이 공시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갖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성 이론에서는 기업은 사회와의 계약 하에서 운영되는데, 사회는 기업의 가치가 사회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인지할 때는 계약을 폐기할 수 있으므로 이 계약의 지속성에 대한 위협(정당성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CSR보고서에 대한 외부검증을 받는다고 주장한다(Casey and Grenier, 2015).

정당성 이론 이외에 CSR검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신호이론(signaling theory)이 있다. 신호이론에 의하면 CSR보고는 조직의 평판에 대한 위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간주된다(Bebbington, Larrinaga-Gonzalez, and Moneva, 2008; Michelon, Pilonato, and Ricceri, 2015). 양호한 CSR 성과는 기업이 훌륭한 CSR 실무를 수행하고 있고 시장가치도 높다는 사실을 투자자와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데 이바지한다(Sun, Salama, Hussainey, and Habbash, 2010). 즉 CSR공시의 목적은 잠재적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시장에 좋은 성과를 알리는 것이다. 경영자는 자신들의 성과가 경쟁기업에 비해 뛰어나다면 이해

관계자(특히 비재무적 이해관계자)에게 자신의 실적을 증명하고 싶어 하며, 외부검증을 통해 좋은 실적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할 것이다. 이런 논리는 CSR 성과의 크기와 외부검증 채택 간의 정(+)의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III. 연구가설의 설정과 연구의 틀

3.1 CSR 검증의 채택에 관한 결정

3.1.1 CSR활동에 관한 정보 불균형과 CSR검증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경영자가 정보 불균형과 대리인 비용(agency costs)을 감소시키기 위해 감사를 채택한다고 주장하였다(Abdel-Khalik, 1993). 그것은 채권자나 투자자는 공적으로 공시된 정보라고 해도 경영자의 사적정보에 대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상당한 비용이 들므로, 경영자에게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경영자는 외부감사(검증)를 통해 정보 불균형과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킨다.

특히 환경정보 등의 CSR정보는 측정이 복잡하고 국제적 통용 기준이 없어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기 쉽다. 구체적으로는 CSR 보고서 내용 중에서 온실가스와 환경회계, 그리고 사회공헌 정보가 그 정보 중요성 면에서 기업, 환경 관리자, 연구자 사이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

7) 이 이외에도 자발적 공시 이론(voluntary disclosure theory)은 적극적인 환경활동으로 인해 좋은 환경성과를 올린 기업일수록 다른 기업과 차별적이면서 공공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정보를 자발적으로 더 많이 공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 공시이론 연구를 확장하여 일부 연구는 CSR보고가 어떻게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사회적·환경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불균형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고려했다(Dhaliwal, Li, Tsang, and Yang, 2011).

으며 불균형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Schaltegger, Gibassier, and Zvezdov, 2011; Gray, 2013). 따라서 본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모든 온실가스를 CO₂로 환산한 배출량)과 환경회계(환경투자액), 사회공헌비용,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이들 정보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CSR검증(검증채택 여부, 검증수준과 검증유형)을 채택한다는 논리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첫째,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은 이해관계자(또는 커뮤니티)로부터 합법적으로 배출감소의 압력이나 위협을 받게 되고, 제품의 시장성을 악화시켜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Datt et al., 2015). 이런 문제는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의 탄소성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검증을 받도록 유도한다. 한편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설문참여 기업들은 적극적인 환경경영의 실행과 그 노력을 외부 환경감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DP, 2014; Green and Zhou, 2013).

둘째, 환경회계정보(환경투자 등)의 경우는 법적으로 강제적인 규정에 의해 산출되지 않고 임의규정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실제로 샘플기업의 환경회계에 대한 공시를 보면 환경투자와 환경비용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구분하거나 환경투자의 구성항목 등이 경영자의 태도와 평가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환경회계(환경투자)의 경우에는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며, 환경회계정보의 공시가 가식적 행위나 조작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경영자가 주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검증을 받으려고 하게 된다(Clarkson, Li, Richardson and Vasvari, 2008; Zhou et al., 2016). 그리

고 외부검증 기준이 재무회계 감사기준과 달리 진실한 환경회계정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된 데이터 내용의 산출 근거, 작성 및 산정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주로 검증하기 때문에 경영자는 더욱 능동적으로 검증을 받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셋째 실제로 사회공헌비용을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따라 사회공헌 지출액의 크기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선호와 업적평가방식에 따라 크기와 내용이 달라지고, 공시 자체가 가식적 행위에 그칠(greenwashing)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투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해관계자(특히 재무적 이해관계자)는 경영자에게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경영자는 외부검증을 통해 정보 불균형과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1-1을 통해 CSR활동(온실가스 배출량, 환경투자, 사회공헌비용)의 크기와 CSR검증 결정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H1-1: CSR활동 관련 정보의 수준은 CSR검증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2 기업-수준 특성과 CSR검증

첫째, 대기업일수록 통제범위가 넓다는 문제를 해소하고 조직구성원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한 효과적인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내부감사 및 외부검증을 능동적으로 채택한다고 하였다(Abdel-Khalik, 1993). 대기업은 많은 구성원과 복잡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또한 환경오염 배출원이 다양하고 추적하기 어려워 각 이해 주체 간에 정보 불균형이 초래되기 쉽다(Datt et al., 2014). 즉 대기업은 보다 대규모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존재하므로 대기업의 경영자는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환경을 포함한 CSR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하고서라도 검증을 받고자 한다(Clarkson et al., 2008; Simnett, Nugent, and Huggins, 2009b). 반면에 대기업일수록 CSR검증을 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연구대상이 특정한 1개 국가에 속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비교연구를 위해 다수의 다양한 국가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기업규모 이외에 투입되는 다른 설명변수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Peters and Romi, 2015).

둘째 높은 수익성을 올린 기업일수록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환경과 사회성공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공시하고자 한다. 수익성은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전달하기 위한 자유와 유연성을 허용하는 요인이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기업이익은 지속가능보고서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한편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변수 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Margolis, Elfenbein, and Walsh, (2011)은 CSR활동과 수익성과 같은 재무성과 사이에 이종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메타-분석(meta-analysis)의 결과를 제시했다.

셋째 Simnett et al.(2009a)의 결과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갖는 기업은 CSR보증을 받지 않으려 한다. 강한 채권자들의 모니터링은 높은 부채비율 기업이 부채 약정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 CSR검증에 자원 배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어렵게 하고 CSR검증을 억제하게 만든다. 이 결과

는 재무적 제약이 CSR검증의 해택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1-2를 통해 기업-수준 특성(기업규모, 수익성, 부채비율)과 CSR 검증 결정과의 관련성을 실증한다.

H1-2: 기업-수준 특성은 CSR검증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3 산업특성과 CSR검증의 관련성

상당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산업 고유의 특성이 CSR활동의 내부감사와 외부검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Datt et al., 2014; Peters and Romi, 2015; Zhou et al., 2016). 본고에서는 환경침해산업,⁸⁾ 규제산업, 그리고 CSR Index를 중심으로 이들 산업특성과 CSR검증(검증채택 여부, 검증수준, 검증품질)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첫째, 환경민감 또는 환경침해산업은 공해를 일으키기 쉽고 그런 이유로 환경규제와 압력단체의 표적이 되기 쉽다(Brammer and Pavelin, 2006). 이런 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오염배출량이 많고 환경위험과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외부에서는 평가하기가 어렵고(Kolk and Perego, 2010), 따라서 CSR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사용자의 확신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3자 검증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자 한다. 즉 이런 기업에서는 CSR정보의 불균형이 크며 따라서 해당 기업의 경영자는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검증을 자발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Datt et al., 2014).

8) 환경민감산업(environmental sensitive industry)에는 석유가스, 섬유, 종이펄프, 가죽, 플라스틱, 화학, 철강, 유틸리티 업종 등이 포함된다(Cho, Michelon, Patten, and Roberts, 2014; Patten 2002). 규제산업에는 방송, 통신, 운송,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그리고 담배와 일부 공공사업도 포함된다.

둘째 기업은 통상 규제기관들로부터 호의를 얻기 위해 CSR검증을 받고자 한다. 실제 미국의 유틸리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CSR 관련 공시가 규제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Casey and Grenier, 2015). 한편 규제 자체가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한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바로 CSR검증을 억제시키는 요인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만일 이해관계자들이 CSR보고서가 규제기관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었다고 인식한다면 규제기관이 CSR 관련 정보 공시를 요청하는 것이 직접 정보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게 된다. 역으로 규제기관에서 CSR정보를 요청하지 않거나 직접 면밀히 검토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영자가 잘못된 공시에 대한 후폭풍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이해관계자들이 믿는다면 외부검증은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Durnev and Kim, 2005; Choi and Wong, 2007). Casey and Grenier (2015)에서는 미국의 금융과 유틸리티 기업은 다른 산업의 기업보다 더 많은 사회적 환경적 위험에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CSR 검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런 산업은 미국에서 강한 규제를 받는데 규제감독 자체가 CSR검증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H1-3: 산업 특성은 CSR검증 결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3.2 CSR검증 제공자의 선택

통상 CSR검증 제공자는 회계법인과 엔지니어링 또는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양분된다. 회계법인은 정

보의 중요한 정확성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감사와 유사한 CSR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계법인 이외의 검증 제공자는 다양한 CSR활동의 개선책을 제공하는 보다 정성적(질적)인 검증을 수행한다. 회계법인이 검증한 보고서를 보면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해서 계량적 접근이 많고 회계법인 이외의 전문기관이 검증한 보고서에서는 현재 CSR 프로세스의 효과성과 개선안 권고 등과 관련된 정성적(질적) 표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회계법인은 규모의 경제와 새로운 감사기술에 투자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잘 개발된 글로벌 감사 기준을 갖고 재무제표 감사에서 쌓은 경험이 있으며(Cohen and Simnett, 2015), 검증이 일정하게 높은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품질통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⁹⁾ 이에 비해 회계법인 이외의 검증 제공자는 특정한 기술과 CSR주제에 관한 집약적 지식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경쟁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Corporate Register, 2008).

이와 같이 회계법인과 기타 전문기관 사이의 검증 품질에는 차이가 있는데 비록 전문기관의 검증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은 인정되나 회계법인에 의한 검증이 통합성, 독립성, 보증 기술에 대한 명성이 높으므로 대체적으로 회계법인이 신뢰성의 측면에서는 높은 품질의 검증을 수행한다고 평가되고 있다(Casey and Grenier, 2015; Knechel, Niemi, and Sundgren, 2008). 그러나 어느 쪽이 경쟁우위에 있는지는 연구대상과 연구범위에 따라 일관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CSR검증 제공자의 선택에 관한 연구결과가 혼합되어 나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CSR에 강한 의지를 갖는 기업이 회계법인에

9) 회계법인에 의한 검증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고유의 독자성, 증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력, 정보시스템, 다른 전문가와의 조정력에 의한 보증 전문성 등이 있다(Gray, 2000; Knechel et al., 2008).

의한 검증을 선호한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Clarkson, Li, Richardson and Tsang, 2015). 반면에 CSR활동과 관련된 정보불균형에 대해서 보면 CSR 평가점수(KLD score 등)¹⁰⁾ 높을수록 그리고 CSR ranking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sey and Grenier, 2015). 이들 점수와 순위는 경제, 환경, 사회를 모두 평가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이것을 환경효율(매출액/CO2배출량),¹¹⁾ 환경투자, 사회공헌비용의 크기로 대신하여 측정한다.

H2-1: CSR활동의 수준은 CSR검증 제공자와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기업-수준의 특성과 CSR검증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첫째 대기업일수록 환경투자와 사회공헌 규모도 크고 이들 정보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려 할 것이므로 검증 품질이 높은 CSR검증을 회계법인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imnett et al., 2009a). 반면에 Casey and Grenier(2015)에서는 대기업일수록 오히려 회계법인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 회계법인들의 CSR검증 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둘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회계법인의 수수료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회계법인 이외의 기술 또는 컨설팅 기업으로부터 검증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Casey and Grenier, 2015; Simnett et al., 2009a). 셋째 수익성은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CSR(또는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전달하기 위한 자유와 유연성을 허용하는 요인이다. 높은 수익성을 올린 기업일수록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환경과 사회성과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더 높은 품질 수준으로 공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수익성과 검증 제공자의 선택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Casey and Grenier, 2015; Zhou et al., 2016).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 가설 2-2를 통해 선행연구 결과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H2-2: 기업-수준의 특성은 CSR검증 제공자와 관련이 있다

끝으로 산업 특성과 CSR검증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Kolk and Perego(2010)에서는 금융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회계법인에 의한 검증을 선호하지만 그 외 다른 산업에 속하는 기업에서는 검증 제공자의 선택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Simnett et al. (2009a)과 Casey and Grenier(2015)에서도 환경민감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환경과 사회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회계법인에 의한 고품질의 검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산업 특성은 검증 제공자의 선택과 유의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

10)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에서 발표하는 5가지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ESG)에 대한 해당 기업의 평가 점수인데, 대표적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글로벌 400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로서는 KLD400과 Domini 400 Social Index가 있다.

11) 환경효율(Eco-Efficiency)은 탄소효율성의 역수로서 매출액에 대한 CO₂배출량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분모)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분자) 것에 초점을 맞춘 지표로서(WBCSD, 2000), 경제와 환경성과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가 되는 척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Hahn, Figge, Liesen, and Barkemeyer, 2010).

에서도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가설 2-3을 설정한다.

H2-3: 산업 특성은 CSR검증 제공자 선택과 관련이 없다

3.3 CSR검증의 유형

검증업무의 종류를 AA1000AS(2008)에서는 두 가지 유형(Type 1, Type 2)으로 구분하고 있다. Type 1은 검증의 기본원칙인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의 충족 정도를 검증하는 것이며 Type 2는 이 세 가지 원칙은 물론 특정한 분야(specified sections)에 대한 신뢰성 원칙의 충족 정도까지 검증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검증 제공자가 검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검증의 원칙, 평가기준, 조직이 제공해야 할 증거(증빙서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증 제공자가 Type1에 대한 규칙준수를 평가할 때와 Type2 검증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할 때 구하게 되는 증거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AccountAbility, 2009).

H3-1: CSR활동의 수준은 CSR검증 유형과 관련이 있다

H3-2: 기업-수준의 특성은 CSR검증 유형과 관련이 있다

H3-3: 산업 특성은 CSR검증 유형과 관련이 있다

3.4 기업 지배구조의 조절효과

기업 지배구조 자체가 외부검증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Cohen et al., 2004, 2015) 연구도 있으나 대부분의 재무제표 감사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강도와 감사인의 선정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Cohen, 2004; Carcello, Hermanson, and Ye, 2011). 즉 지배구조와 감사인 선택에 관한 연구의 일반적 결과는 강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자신들의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이 높은 검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Peters and Romi, 2015; Zhou et al., 2015). Peters and Romi(2015)는 지속가능성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메커니즘이 CSR보고서의 자발적 검증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 책임자(CSO)가 존재하는 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증서비스와 정(+)의 관련성이 있으며 이 관계는 CSO가 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를 보유할 때 더욱 강화된다. 또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킨 환경위원회만이 검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더욱이 보다 많은 전문가를 참여시킨 위원회 일수록 컨설팅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검증을 선호한다. 그리고 동일 산업 내에서 CSO를 고용하면서 조약한 환경성과를 나타낸 기업이 상대적으로 검증 없는 CSR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선호한다. Clarkson et al.(2015)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외부검증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검증제공자 선택(회계법인)에는 정(+)의 유의적 영향을 미쳤다. Zhou et al.(2016)에서도 기업-수준의 지배구조 요인이 검증서비스의 채택여부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가정 하에서(Francis, Khurana, Martin, and Pereira, 2011) 국가 수준의 제도적 요인(기업문화, 법률 체계)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제3자 검증 간의 관계에서 기업 수준의 지배구조가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Zhou et al.(2016)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국가(stakeholder-oriented countries)와 약한 법률실행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

는 국가에 속한 기업이 온실가스 인증에 대한 더 큰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관계는 강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런 사고는 높은 품질의 감사가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완화시키기 위한 지배구조 메커니즘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DeFond and Zhang, 2014).

그런데 CSR검증에 있어서는 검증인 선정에 위한 경쟁시장이 형성되어 있고(회계법인, 전문컨설팅 기관 등), 상이한 유형의 검증 제공자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으며 재무제표 감사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실시되므로, 지배구조 강도와 검증인 선정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Huggins, Green, and Simnett, 2011). 오히려 지배구조의 강도에 따라 제3자 검증의 실시 유무에 대한 결정과 검증기관의 선택에 기업의 CSR활동의 특성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증폭되거나 약화될 수도 있다(Zhou et al., 2016). 따라서 가설4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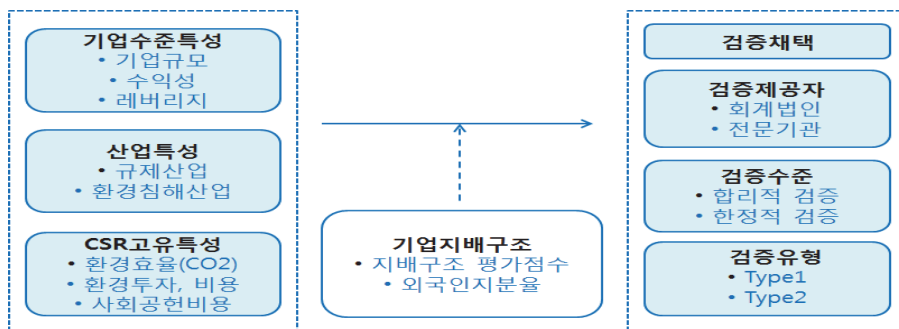
H4: CSR활동의 수준(정보불균형)이 제3자 인증의 실시와 검증 제공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지배구조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와 가설설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본 연구의 틀을 만들 수 있다.

3.5 연구모형

본 연구모형의 이론적 배경은 Simnett et al. (2009a)와 Casey and Grenier(2015)에서와 같이 CSR 보고의 의사결정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적 관점을 포괄하는 메타-이론적 관점을 채택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기업은 자신들의 CSR보고의 신뢰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때 CSR검증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부정적 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제3자 검증 없이도 신뢰할 수 있다고 간주되지만 긍정적 정보를 위해서는 제3자 검증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업의 위험이 검증받지 않으면 긍정적 CSR정보는 과대포장(greenwashing) 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모형에서 메타-이론적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단일 이론에 의해 제시되는 이유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이 CSR검증을 받는 다양한 이유를 인식할 수 있다.

메타-이론적 관점에 기초한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 H1과 H2를 검증하기 위해 2종류의 설명변수(CSR정보의 불균형 수준, 기업 특성)가 CSR검증의 채택 여부와 검증 제공자의 선



〈그림 2〉 연구의 틀

택, 검증수준(합리적, 한정적 검증)과 검증품질(검증인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 CSR 검증의 채택 여부는 기업이 제3자 외부검증을 받은 경우 1을 할당(그렇지 않은 경우 0을 할당)하고, 감사품질은 회계법인이 수행하면 1, 기타 전문기관이 수행하면 0을 부여한다. 또한 검증유형은 Type1은 1 Type2는 0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 레버리지 등은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인 동시에 통제변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설1과 2를 추정하는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Pr(ASSURE/PROV/TYPE=1)_i = & \beta_0 + \beta_1 CSR_i \\ & + \beta_2 FIRM_i + \beta_3 IND_i + \beta_4 FOREIGN_i \\ & + \beta_5 YEAR + \epsilon \end{aligned} \quad (1)$$

모든 변수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부록1에 나타나 있다. 추정식 (1)에서 종속변수를 보면 ASSURE는 더미변수로서 CSR검증을 채택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코드를 부여한다. PROV는 역시 더미변수인데 검증 제공자가 회계법인이면 1, 기타 전문기관이면 0을 선택한다. TYPE은 검증 유형을 뜻하는데 Type1은 1, Type2는 0으로 처리한다. 설명변수를 보면 CSR은 CSR 특성 변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Efficiency(환경효율), ECC(환경투자), 그리고 SC(사회공헌비용) 세 가지 변수가 포함된다. FIRM은 기업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데 SIZE(기업규모), ROA(수익성), 그리고 LEV(부채비율)가 포함된다. IND은 산업특성 변수인데 ESI(환경민감산업)과 REGU(규제산업)가 포함된다. 이 외에 FOREIGN은 지배구조에 관한 변수로서 외국인투자자비율을 나타

낸다.¹²⁾ YEAR는 연도고정효과를 보는 변수이다.

다음으로 연구가설 H3을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CSR검증의 채택 여부와 검증수준, 검증품질, 검증유형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지배구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지배구조와 CSR 고유 특성을 나타내는 3가지 설명변수(CSR 고유 특성, 기업특성)의 상호작용 항인 CSR*FOREIGN를 설명변수에 추가하여 다음의 회귀식을 추정한다.

$$\begin{aligned} \Pr(ASSURE/PROV/TYPE=1)_i = & \beta_0 + \beta_1 CSR_i \\ & + \beta_2 FIRM_i + \beta_3 IND_i + \beta_4 FOREIGN_i \\ & + \beta_5 CSR * FOREIGN_i + \beta_6 FIRM * FOREIGN_i \\ & + \beta_7 YEAR + \epsilon \end{aligned} \quad (2)$$

IV. 실증분석 결과

4.1 자료의 수집

본고에서의 실증분석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자발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또는 CSR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샘플은 5년간 218개(기업-연도)이며 표본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다. 다만 금융과 보험업 및 서비스업은 환경투자 등의 자료가 없어 제외하였다. 내부감사와 외부검증에 대한 자료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통해 수집되며, 환경성과의 측정도구인 탄소배출량에 대한 자료는 CDP(탄소공시 프로젝트)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등에서 공

12) 본고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비율을 사용한다. 그것은 김선화·정용기(2012)와 김애현·유재욱(2013) 등에서 외국인지분율은 CSR 활동과 관련이 있으나 개인 대주주나 기관투자자의 경우는 CSR활동과 유의적 관련이 없었으며 또한 외국인지분율은 CSR 활동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표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해당 기업의 환경보고서나 CSR보고서에서 수집된다. 지배구조평가점수는 기업지배구조원의 공표자료를 활용한다. 재무성과와 통제변수(기업규모, 레버리지비율), 외국인투자비율 그리고 사회공헌비용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자료는 KIS-Value와 FN-Guide 등에서 수집한다.

4.2 분석 결과

〈표 1〉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환경성과, 사회성과 및 경제성과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제시한다. 기술통계를 보면 경제성과에 해당하는 변수로서 매출액의 평균은 15조4천억원, 총자산의 평균은 16조5천억원 정도로서 대부분이 대기업이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경제성과를 보면 투자수익률(ROA)은 평균 6% 정도이며 부채비율은 평균 52%로 나타났다. CSR 활동을 대변하는 변수를 보면 탄소배출량은 최소 3,750톤 최대 9,150만톤으로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투자액과 사회공헌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을 보면 각각 0.9%와 0.2%

로서 연구개발비 3.5%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음으로 CSR검증에 대한 기술통계를 보면, 전체 샘플 218개 중에서 검증 받은 기업의 비율은 88.5% (193/218)이며, 검증을 받은 193개 샘플 중에서 39개(20.2%)가 회계법인에 의해 검증을 받았으며, 검증의 유형은 Type1이 34.7%(67개) Type2가 65.3%(126개)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상관관계를 보면 규제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매출액 대비 환경투자액과 사회공헌지출이 많으며, 기업규모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규제를 많이 받는 기업은 수익성(자산이익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매출액 대비 환경투자액과 사회공헌지출이 많은 기업은 수익성(ROA)이 떨어지며 이런 기업은 부채비율도 낮게 나타났으나 외국인지분율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공헌지출과 환경투자액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기업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CSR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은 두 가지 비용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은 logit 추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단

〈표 1〉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매출액	5.0861+11	1.5837+14	1.5421+13	2.2493+13
탄소배출량	3,757	91,500,000	4,591,802	12,493,668
매출액/탄소배출량	0.0001	4.6239	0.3841	0.7332
환경투자/매출액	0.0002	0.1096	0.0090	0.0184
사회공헌비용/매출액	0.0001	0.0304	0.0023	0.0040
외국인지주비율	0.00	0.70	0.26	0.18
투자수익률	-0.0886	0.2395	0.0628	0.0614
부채비율	0.1798	0.9732	0.5182	0.1875
총자산	3.3801+11	1.6406+14	1.6484+13	2.3402+13

주) 탄소배출량의 단위는 ton 이며 기타 재무수치는 모두 원 단위이다.

〈표 2〉 변수 간의 상관관계

	Regulated	Efficiency	ECC	SC	ROA	SIZE	LEV	Foreign
1	1							
2	-.011 (.852)	1						
3	.177* (.010)	.172* (.015)	1					
4	.330** (.000)	-.086 (.181)	.584** (.000)	1				
5	-.212** (.000)	-.035 (.571)	-.247** (.000)	-.123* (.046)	1			
6	.273** (.000)	-.022 (.719)	.339** (.000)	.138* (.026)	-.269** (.000)	1		
7	.186** (.002)	.069 (.260)	-.156* (.024)	-.280** (.000)	-.432** (.000)	-.050 (.402)	1	
8	.035 (.550)	-.105 (.090)	-.075 (.278)	.075 (.228)	.317** (.000)	.220** (.000)	-.543** (.000)	1

주) *, **는 각각 상관관계가 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

1: Regulated(규제산업), 2: Efficiency(환경효율) 3: ECC(환경투자) 4: SC(사회공헌지출)
5: ROA(총자산이익율) 6: SIZE(규모) 7: LEV(레버리지비율) 8: Foreign(외국인지분율)

〈표 3〉 CSR검증/검증 제공자/검증유형과 산업특성의 관련성

	Assure	Provider	Type
상수	0.124 (0.486)	-0.805 (-1.934)*	1.085 (1.595)
Regulated	-0.045 (-0.610)	-0.160 (-2.194)**	-0.089 (-0.995)
ROA	0.167 (2.137)**	0.147 (1.855)*	-0.105 (-1.067)
SIZE	0.260 (3.500)***	0.231 (3.138)***	-0.099 (-1.076)
LEV	-0.042 (-0.526)	-0.176 (-2.217)**	0.065 (0.656)
YEAR	yes	yes	yes
correct classification	92.8%	79.8%	60.1%
-2 log likelihood	86.922	164.821	170.993
Nagelkerke R ²	0.236	0.223	0.141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계 1은 CSR검증을 채택하는 결정에 관한 모형의 분석 결과이다. 규제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CSR검증을 적극적으로 채택한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추가로 규제산업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도 산업특성과 CSR검증 채택 사이의 유의적인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 한편 환경침해산업에 속하는 기업일수록 외부검증을 선호한다는 사실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통제변수를 보면 선행연구의 결과(Simnett et al., 2009a; Casey and Grenier, 2015)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CSR 검증을 채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t=3.500$; $p < 0.001$) 나타났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수익성과 CSR 검증 사이에도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발견되었으나($t=2.137$; $p < 0.05$), 높은 부채비율을 가진 기업일수록 CSR검증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재무적인 제약사항이 CSR검증의 채택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지지하지 않으나, <표 3>의 결과에 의하면 다

양한 여신제공기관의 강한 모니터링이 신뢰성 증대의 대체 형태로 작동하거나 부채에 관한 계약조항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 비용이 드는 자발적 CSR 검증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논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Datt et al., 2014). 참고로 <표 4>에 의하면 미검증 기업에 비해 검증을 받은 기업이 수익성(ROA)과 규모가 크며 부채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검증제공자가 전문기관에 비해 회계법인을 선택한 기업에서 수익성(ROA)과 규모가 크며 부채비율은 유의적으로 더욱 낮게 나타났다.

단계 2의 결과(CSR 검증 제공자의 선택)에서도 대체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먼저 어떠한 규제산업(공공, 민간)에서도 회계법인으로부터 CSR 검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났다($t=-2.194$; $p < 0.05$). 통제변수를 보면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대기업일수록 회계법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기업 고객에 대한 회계법인의 CSR 검증 서비스를 위한 효과적 마케팅이 작용했기 때문

<표 4> 변수의 평균값 비교(검증여부와 검증제공자)

	전체샘플 (n=218)	검증기업 (n=193)	미검증기업 (n=25)	t-value 차이분석	회계법인 (n=39)	전문기관 (n=154)	t-value 차이분석
Efficiency	0.384	0.349	0.572	1.823*	0.610	0.281	1.797*
ECC	0.009	0.008	0.025	3.323***	0.016	0.006	2.289**
SC	0.002	0.002	0.002	0.599	0.003	0.002	1.384
Foreign	0.265	0.288	0.307	0.389	0.371	0.266	2.995***
OWN	0.396	0.392	0.472	1.427	0.383	0.394	0.504
ROA	0.063	0.068	0.035	2.062**	0.088	0.062	2.483**
SIZE	15.85	16.06	14.96	3.088***	16.47	15.96	2.034**
LEV	0.518	0.498	0.601	2.143**	0.389	0.526	4.203***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Type1과 Type2에 속한 기업의 설명변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주석 15)에 요약함.

Efficiency(환경효율), ECC(환경투자), SC(사회공헌지출), ROA(총자산이익율), SIZE(규모)

LEV(레버리지비율), Foreign(외국인지분율)

일 것이다. 한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기술 또는 컨설팅 기업으로부터의 검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회계법인의 수수료 프리미엄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단계 3의 결과(CSR 검증업무의 종류)에서는 규제산업 여부와 아무런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

업규모, 수익성, 부채비율과도 유의적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CSR 검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기업의 CSR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환경효율(매출액/CO2배출량)과 CSR검증의 채택 사이에는 부(-)의 관련성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환경효율이 좋은 기업 즉 상대적 탄소배출량이 적은 기업이 이

〈표 5〉 CSR검증에 관련된 추가적 CSR고유 특성 분석

	Assure	Provider	Type
상수	0.806 (2.840)***	-0.650 (-1.358)	1.810 (2.449)**
Regulated	0.086 (0.888)	0.169 (1.861)*	0.069 (0.575)
ROA	0.086 (0.888)	0.169 (1.861)*	0.069 (0.575)
SIZE	0.149 (1.736)*	0.181 (2.068)**	-0.238 (-2.083)**
LEV	-0.301 (-2.894)***	-0.147 (-1.562)	0.095 (0.772)
Efficiency	-0.205 (-2.470)**	0.126 (1.304)	-0.155 (-1.274)
ECC/Sale	-0.284 (-2.613)**	0.126 (1.058)	-0.351 (-2.301)**
SC/Sale	0.067 (0.662)	0.057 (0.501)	-0.308 (-2.322)**
Foreign	-0.175 (-1.544)	0.034 (0.285)	-0.038 (-0.281)
YEAR	yes	yes	yes
correct classification	90.6%	87.8%	73.3%
-2 log likelihood	68.722	64.231	130.39
Nagelkerke R ²	0.415	0.535	0.226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Regulated(규제산업), Efficiency(환경효율), ECC(환경투자), SC(사회공헌지출)

ROA(총자산이익율), SIZE(규모), LEV(레버리지비율), Foreign(외국인지분율)

13) 이것은 실제 회계법인에 의한 검증 수수료가 일반 전문기관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Big3 회계법인의 CSR검증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Corporate Register(2008)에서도 수수료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강조하기 위해 외부 검증을 채택하려 한다는 신호이론(signaling theory)을¹⁴⁾ 부정하고, 오히려 환경효율이 나쁜 기업이 자신들의 실적을 포장하기 위해 외부검증을 채택하려 한다는 사회 정당성 이론(legitimacy theory)을 지지하는 것이다. 환경성과와 관련해서 환경투자는 외부검증의 채택과 부(-)의 유의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도 신호이론 대신에 사회 정당성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제변수를 보면 CSR 검증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을 비교해 보면 CSR검증을 받은 기업들이 규모가 더 크고 부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익성(ROA)과 외부검증 수요 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예상하였으나 ROA의 회귀계수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참고로 <표 4>에 의하면 미검증 기업에 비해 검증을 받은 기업이 오히려 환경효율이 낮고 매출액 대비 환경투자도 작게 나타났으나, 수익성(ROA)과 기업규모는 크고 부채비율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계 2의 결과(CSR 검증 제공자의 선택)에서는 환경효율, 환경투자, 사회공헌비용과 같은 모든 기업 특성요인이 검증 제공자의 선택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제변수를 보면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대기업일수록 회계법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기업 고객에 대한 회계법인의 CSR 검증 서비스를 위한 효과적 마케팅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표 4>에 의하면 검증 제공자가 전문기관이 아닌 회계법인을 선택한 기업에서 환경효율이 높고 매출액 대비 환경투자도 많게

나타났으며, 수익성(ROA)과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기업특성 변수를 나타낸 <표 3>과 <표 5>에서 부채비율 등의 계수부호는 동일하나 유의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CSR 관련 변수가 통제됨으로써 기업특성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관련성이 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Casey and Grenier, 2015 참조).

단계 3의 결과(CSR 검증업무의 종류)에서는 산업특성(규제산업 여부)과는 어떠한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투자와 사회공헌지출의 비율이 높은 기업과 기업규모가 큰 기업은 Type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것은 대기업이면서 환경과 사회공헌 등의 CSR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은 이런 사실을 능동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이들의 감시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검증의 원칙을 적용하는 Type2검증을 선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3 지배구조의 조절효과

CSR 검증에 있어서 지배구조의 역할 특히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외국인지분율의 조절효과를 보면 환경효율이 높은 기업과 사회공헌지출이 많은 기업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수록 CSR 외부검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환경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기업은 회계법인의 의한 외부검증을 선호하지 않으나,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을 시에는 회계

14) 신호이론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보고는 조직의 평판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양호한 지속가능한 성과는 기업이 좋은 지속가능성 실무를 갖고 있으며 시장가치도 높다는 것을 투자자와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데 공헌한다. 이것은 GRI 채택과 같은 지속가능보고의 실무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15) 그러나 <표 4>와 같이 Type1과 Type2에 속한 기업의 설명변수의 평균을 각각 비교한 결과를 보면 환경효율(eco-efficiency)만이 Type2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나머지 모든 설명변수의 평균은 Type1과 Type2에 속한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CSR검증에 있어서 지배구조의 역할

	Assure	Provider	Type
상수	0.854 (2.925)***	-0.268 (-0.550)	1.731 (2.290)**
Regulated	-0.984 (0.888)	-0.999 (-1.791)*	-0.396 (-0.714)
Efficiency	-0.806 (-4.094)***	-0.052 (-0.177)	1.056 (2.670)***
ECC/Sale	-0.367 (-0.892)	-0.994 (-2.777)**	-0.446 (-0.888)
SC/Sale	-0.528 (-1.836)*	0.852 (2.538)**	-0.173 (-0.593)
Foreign	-0.333 (-2.387)**	0.066 (2.143)**	-0.022 (-0.090)
Efficiency* Foreign	0.694 (2.185)**	-0.071 (-0.168)	-1.843 (-3.064)***
ECC*Foreign	0.086 (0.175)	1.127 (2.551)**	1.254 (1.781)*
SC*Foreign	0.559 (1.779)*	-1.006 (-2.708)**	0.024 (0.760)
ROA	0.340 (0.811)	0.053 (0.519)	0.026 (0.213)
SIZE	0.151 (1.753)*	0.117 (1.211)	-0.229 (-1.994)*
LEV	-0.231 (-2.288)**	-0.176 (-1.748)*	0.072 (0.582)
YEAR	yes	yes	yes
correct classification	96.1%	87.8%	77.1%
-2 log likelihood	88.922	51.988	67.387
Nigelkerke R ²	0.344	0.589	0.480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Regulated(규제산업), Efficiency(환경효율), ECC(환경투자), SC(사회공헌지출)
 ROA(총자산이익율), SIZE(규모), LEV(레버리지비율), Foreign(외국인지분율)

법인에 의한 외부검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SR 검증업무의 종류를 보면 환경효율이 높고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은 Type 2를 선택하고 매출 대비 환경투자가 많은 기업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으면 Type 1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기업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으면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이외에 신뢰성 원칙까지 충족시키는지를 검증하는 보다 광범위한 검증대상을 선호한다는 것이며, 환경투자가 많은 기업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으면 포괄

성, 중요성, 대응성 원칙을 보고서 작성과정에 적용했는지를 검토하는 기본 범위의 검증대상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한편 <표 6>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지배구조의 변수로서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지배구조 등급과¹⁶⁾ 대주주지분율은 CSR관련 변수(환경효율, 환경투자, 사회공헌지출)와 CSR검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절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추가분석의 결과

추가분석으로 실시한 결과를 보면 먼저 종속변수로서 검증수준(검증 결과가 합리적 검증이면 1, 한정적 검증이면 0의 더미변수)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대부분의 설명변수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¹⁷⁾ 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를 대리하는 변수로서 기업지배구조원의 지배구조 부문 등급 이외에 대주주지분율을 사용하였으나 검증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산업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에서 환경민감산업의 여부도 검증의 결정, 검증제공자, 검증유형과 관련성이 없었다. 또한 규제산업과 비규제산업으로 양분하는 것이 산업효과를 적정하게 통제하지 못 할 수도 있으므로 규제산업을 크게 4가지(통신, 방송, 운송, 에너지)로 구분하여 실증하였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CSR 활동을 대리하는 설명변수 중에서 온실가스배출량(CO₂로 환산한 배출량) 대신에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의 CDP Band와 CDP Score를 사용했으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도 본 연구에서는 Scope1과 Scope2를 합산한

배출량으로 분석했으나, 보다 정직한 분석을 위해 Scope1과 그리고 Scope 1, 2, 3을 합산한 배출량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했으나 역시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CSR(사회적 책임) 보고서 내용에 대한 독립된 제3자 검증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가 이런 관계에서 어떤 역할(조절기능)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특성을 고려한 분석 결과를 보면 규제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CSR검증을 적극적으로 채택한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환경침해산업 여부도 CSR검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규제산업(공공, 민간)에서는 회계법인 대신에 전문 컨설팅기관으로부터 검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SR 검증업무의 종류(Type1, Type2)와 규제산업 여부와는 어떠한 관련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CSR 검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기업의 CSR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환경효율과 CSR검증의 채택 사이에는 부(-)의 관련성이 관찰되고 환경투자도 외부검증의 채택과 부(-)의 유의적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신호이론 대신에 사회정치적 정당성 이론(legitimacy theory)을 지지하

16) 지배구조 평가점수의 기술통계를 보면 평가점수가 공시된 샘플 174개 중에서 A+ 24개(13.8%), A 32개(18.4%), B+ 94개(54%), B 22개(12.6%), C+ 2개(1.1%)로 나타났다. 지배구조평가등급을 점수화시키는 방법은 A+를 6점, D를 1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였다.

17) 이것은 전체 검증을 받은 샘플 193개 중에서 합리적 수준(높은 수준)을 채택한 기업이 3개에 지나지 않아 지나친 데이터의 편중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효율, 환경투자, 사회공헌비용과 같은 모든 CSR 특성요인이 검증 제공자의 선택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투자와 사회공헌지출의 비율이 높은 기업과 기업규모가 큰 기업은 Type2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준의 특성에 해당하는 통제변수가 CSR검증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작을수록 CSR검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회계법인을 검증제공자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변수가 CSR 검증업무의 종류(Type1, Type2)에는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끝으로 지배구조 변수인 외국인지분율과 CSR활동(환경효율, 사회공헌비용)의 상호작용 효과는 외부검증의 채택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환경투자와의 상호작용은 검증제공자로서 회계법인을 선호하고 광범위한 Type2의 원칙 적용을 선택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데이터 활용의 제약과 제한된 연구접근 방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검증 관련 연구가 매우 미진한 상태에서(Darnall et al. 2009; Cohen and Simnett 2015)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CSR검증의 수준과 검증업무의 종류까지 검증의 연구대상을 확대한 것이 연구의 공헌점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검증 관련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강조하였고 거시적인 산업특성 및 미시적인 기업-수준 특성과 지배구조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실증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사업보고서에 녹색경영정보 기재가 의무화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정책 당국에서 CSR보고서 검증을 의무화하거나 활성화하는데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

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샘플기업이 한정되어 있어 결론을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것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샘플이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투자 정보에 대해 자발적으로 측정해서 보고하는 체제로 인한 데이터의 편의와 CDP 데이터베이스나 CSR보고서 데이터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향후 연구로서는 검증의 수요와 공급 측의 양면에서 분석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며, 재무회계감사의 제공자와 CSR검증 제공자가 동일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떠한 결정요인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기업문화와 국가문화 등을 고려한 연구 등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선화·정용기(2012), “외국인소유주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통제능력,” **회계학연구**, 37(2), 1-62.
- 김성우(2015), **지속가능경영보고의 인증과 법적 책임**, 지속가능경영보고 및 효과측정 심포지움 한국회계학회 발표자료, 한국회계학회
- 김애현·유재욱(2013),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6(2), 219-240.
- 전영승(2012), “지속가능보고서의 제3자 검증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26(3), 135-157
- Abdel-khalik, A.R.(1993), “Why do Private Companies Demand an Audit? A Case for Organizational Loss of Control,”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8 (winter), 31-52.
- AccountAbility(2009), “Guidance for Reporting Organisations Seeking Assurance to AA1000AS” (2008)
- Bebbington, J., C. Larrinaga-Gonzalez, and J.

- Moneva(2008), "Corporate Social Reporting and Reputation Risk Management,"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21(3): 337-361.
- Brammer, S., and S. Pavelin(2006), "Voluntary Environmental Disclosure by Large UK Companie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33(78), 1168-1188.
- Carcello, J. V., D. R. Hermanson, and Z. S. Ye (2011). "Corporate Governance Research in Accounting and Auditing: Insights, Practice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0(3), 1-31.
- Casey, R. J., and J. H. Grenier(2015), "Understating and Contributing to the Enigma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ssurance in the United State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34(1), 97-130.
- CDP(2014), S&P 500 Climate Change Report, Available at <https://www.cdp.net/CDPResults/CDP-SP500-leaders-report-2014.pdf>.
- Cho, C. H., G. Michelon, D. M. Patten, R. W. Roberts(2014), "CSR Report Assurance in the USA: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Determinants and Effects," *Sustainability Accounting, Management and Policy Journal*, 5(2), 130-148.
- Choi, J., and T. J. Wong(2007), "Auditors' Governance Functions and Legal Environments: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4(Spring), 13 - 46.
- Clarkson, p., Y. Li, G. Richardson and A. Tsang (2015), "Voluntary External Assur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s and the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Membership: International Evidenc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Queensland.
- Clarkson, P., Y. Li, G. Richardson and F. Vasvari (2008), "Revisiting the Relation between Environment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Disclosure: An Empirical Analysi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33(4-5), 303-327.
- Cohen, J., G. Krishnamoorthy, and A. Wright(2004), "The Corporate Governance Mosaic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23, 87-152.
- Cohen, J., and R. Simnett(2015), "CSR and Assurance services: A Research Agenda,"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4(1), 59-74.
- Corporate Register. 2008. Assure View: The CSR Assurance Statement Report. Available at: <http://www.corporateregister.com/pdf/AssureView.pdf>.
- Darnall, N., I. Seol, and J. Sarkis(2009), "Perceived Stakeholder Influences and Organizations Use of Environmental Audits,"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34(2), 170-187.
- Datt, R., G. Donleavy, and Q. Tang(2014), "Corporate Carbon Opacity and Voluntary GHG Statement," Working paper.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 Defond, M., and J. Zhang(2014), "A Review of Archival Auditing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8(2 - 3), 275-326.
- Dhaliwal, D. S., O. Z. Li, A. Tsang, and Y. G. Yang (2011), "Voluntary Nonfinancial Disclosure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The Initi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86(1), 59-100.
- DQS CFS(2016), "Sustainability Reporting: Third-Party Assurance," DQS CFS GmbH

- Durnev, A., and E. Kim(2005). "To Steal or Not to Steal: Firm Attributes, Legal Environment, and Valuation," *Journal of Finance*, 60, 1461-1493.
- Francis, J. R., I. K. Khurana, X. Martin, and R. Pereira(2011). "The Relative Importance of Firm Incentives Versus Country Factors in the Demand for Assurance Services by Private Entiti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8(2), 487-516.
- Gray, R., R. Kouhy, and S. Lavers(1995). "Corpo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Report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Longitudinal Study of UK Disclosure," *Accounting, Auditing & Accountability Journal*, 8: 47-77.
- Gray, R.(2000). "Current Developments and Trends in Social and Environmental Auditing, Reporting, and Attestation: A Review and Com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4: 247-268.
- Gray, R.(2013), "Back to Basics: What do We Mean by Environmental(social) Accounting and what is it for?-A Reaction to Thornton," *Critical Perspective on Accounting*, 24(6), 459-468.
- Green, W., and S. Zhou(2013), "An International Examination of Assurance Practices on Carbon Emissions Disclosures," *Australian Accounting Review*, 23(1), 54-65.
- GRI(2013), "The External Assurance of Sustainability Reporting," GRI. <https://www.globalreporting.org/resource/library/GRI-Assurance.pdf>
- GRI(2013), "Trends In External Assurance Of Sustainability Reports: Spotlight On the USA." GRI.
- Hahn, T., F. Figge, A. Liesen, and R. Barkemeyer. 2010. Opportunity cost Based Analysis of Corporate Eco-efficiency: A Methodology and its Application to the CO₂-efficiency of German companie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91 (10): 1997-2007.
- Huggins, A., W. J. Green, and R. Simnett(2011). "The Competitive Market for Assurance Engagements on Greenhouse Gas Statements: Is there a Role for Assurers from the Accounting Profession?" *Current Issues in Auditing* 5 (2): A1-A12.
- Knechel, W. R., L. Niemi, and S. Sundgren(2008), "Determinants of Auditor Choice: Evidence from a Small Client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ting*, 12(1), 65-88.
- Kolk, A., and P. Perego(2010). "Determinants of the Adoption of Sustainability Assurance Statements: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29(3), 182-198.
- KPMG(2013), "KPMG International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2013.
- KPMG(2015), "KPMG International Survey of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ing,"2015.
- Margolis, J. D., H. A. Elfenbein, and J. P. Walsh (2011). "Does It Pay to Be Good and Does It Matter?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and Financial Performance," Working paper, Harvard University.
- Michelon, G., S. Pilonato, F. Ricceri(2015), "CSR Reporting Practices and the Quality of Disclosure: An Empirical Analysis," *Critical Perspectives on Accounting*, 33, 59-78.
- O'Dwyer, B.(2011). "The Case of Sustainability Assurance: Constructing a New Assurance Servi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8(4), 1230-1266.

- Owen, D.(2007), "Assurance Practice in Sustainability Reporting," In Unerman, J., Bebbington, J., and O'Dwyer, B.(Eds.), *Sustainability Accounting and Accountability*, Routledge, Abingdon.
- Patten, D. M., 2002. The Relation between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Disclosure: A Research Note.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27, 763-773.
- Peters, G., and A. Romi(2015). "The Association between Sustainability Governance Characteristics and the Assurance of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34(1), 163-198.
- Schaltegger, S., D. Gibassier, and D. Zvezdov(2011). "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A Bibliometric Literature Review. Center for Sustainability Management," Leuphana University of Lueneburg.
- Simnett, R., A. Vanstraelen, and W. F. Chua(2009a). "Assurance on Sustainability Report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Accounting Review*, 84(3), 937-967.
- Simnett, R., M. Nugent, and A. L. Huggins(2009b). "Developing an International Assurance Standard on Greenhouse Gas Statements," *Accounting Horizons*, 23(4), 347-363.
- Sun, N., A. Salama, K. Hussainey, M. Habbash (2010), "Corporate Environmental Disclosure, Corporate Governance and Earnings Management," *Managerial Auditing Journal*, 25(7), 679-700.
- WBCSD(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00) 『Eco-efficiency: Creating More Value with Less Impact』
- Zhou, S., R. Simnett, and W. Green(2016), "Assuring a New Market: The Interplay between Country-level and Company-level Factors on the Demand for Greenhouse Gas (GHG) Information Assurance and the Choice of Assurance Provider,"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Forthcoming.

〈부록 1〉 변수의 정의

특성	변수	변수의 정의
검증 관련 변수	<i>Assured</i>	CSR보고서 내용에 대해 외부검증을 받으면 1, 받지 않으면 0
	<i>Provider</i>	검증제공자가 회계법인이면 1, 기타 전문기관이면 0
	<i>Level</i>	검증수준이 제한된 수준이면 1, 합리적 수준이면 0
	<i>Type</i>	Type1의 검증은 1, Type2의 검증은 0
산업 특성	<i>Regulated</i>	규제산업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기업 특성 변수	<i>ROA</i>	총자산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i>SIZE</i>	총자산을 로그값으로 치환하여 계산
	<i>LEV</i>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CSR 관련 변수	<i>Efficiency</i>	환경효율((매출액/CO2배출량), 탄소배출량의 단위는 ton이며 온실가스를 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한 수치임. Scope1과 Scope2를 합산, 매출액 단위는 백만원으로 측정
	<i>ECC</i>	CSR보고서의 환경회계 계정 중에서 환경투자(자본적 지출)와 환경비용(수익적 지출)을 합산한 금액
	<i>SC</i>	사회공헌비용이며 기부금과 기타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합계해서 측정
지배 구조	<i>Foreign</i>	외국인투자자 지분비율
기타	<i>YEAR</i>	연도 지수

Determinant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ssurance and the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Keun-hyo Yook*

Abstract

The use of external, independent reviews of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r sustainability management processes and final disclosures is intended to increase the robustness, accuracy and trustworthiness of disclosed information.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e CSR reports assurance and identifies key potential determinants of the demand for assurance, the choice of assurance provider, level of assurance, and the type of assurance.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potential moderating effect of company-level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stics on the assurance decisions. Our sample is obtained from three data sources. Data on carbon emissions are obtained from the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which i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firm's CSR or environmental report. The company's financial statement data are obtained from KIS-Value Databank System. Our final sample consists of 50 firms(126 firm-year observations) in the regression for testing assurance decisions and determinants of the decisions.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reveal that firms in ESI (environmental sensitive industry) and regulated industries are not more likely(than firms in other industries) to obtain CSR assurance despite facing significant social and environmental risks. Also, choice of assurance provider and type of assurance are not associated with particular industries. Second, we find that firms with a high eco-efficiency and environmental investment have a negative incentive to voluntarily purchase an independent CSR assurance. However there is no associations between CSR related characteristics(such as eco-efficiency, environmental investment, social contribution expenditure) and the choice of assurance provider. Firms with a

* Professor, School of Accountancy,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irst Author

high level of social contribution expenditure and environmental investment have a preference for Type2 assurance. The study find several firm characteristics are associated with CSR assurance demand. Third, the results show that large firms and low leveraged firms are more likely to obtain CSR assurance and to choose the accounting profession for an assurance provider. However these firm characteristics are not associated with assurance typ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upported the model that presumed company-level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stics(foreign investor ownership) as moderator.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study foreign investor ownership largely play a role of crucial moderator that intervene in the way which CSR related characteristics(eco-efficiency, social contribution expenditure) affect assurance decisions.

In sum, the results of our investigation may help to explain why CSR report assurance remains so limited in this region and what might be necessary to increase its use. Also, our study provides extra insights on CSR or sustainability assurance practice and an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that are correlated with CSR assurance which should be useful for law makers who consider developing policy initiatives for CSR assurance and for accountants or consultants who provide services in such a fast-growing and highly promising market.

Key words: assura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corporate governance, sustainability, assurance provider, social contribution

-
- 저자 육근효는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회계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산수산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와 경영학석사, 동아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일본 고베대학, 요코하마국립대학, Akron대학에서 초빙 및 객원교수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원가계획, 성과관리, 환경회계 (환경관리회계) 등이다.